### [양형위원회 제114차 회의 경과 및 결과의 요지]

#### 1. 양형위원회 제114차 회의 내역

- 일시 : 2022. 1. 24. 15:30
- 장소 : 대법원 1601호 중회의실
- 주요 안건
  - ①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확정
  - ② 벌금형 양형기준 설정 원칙안 확정
  - ③ 양형기준안에 대한 제17차 공청회 개최계획안 확정

#### 2. 운영지원단 업무보고

- 전문위원 회의 업무지원
- 양형기준 관보 게재 보고
- 전문위원 개임, 위촉장 수여식 개최
- 2022년도 상반기 양형자료분석관 직무교육
- 양형기준 수정안 및 원칙안 의견수렴 계획 보고
- 2021 영문 양형기준 발간·배부
- 영문 홈페이지 개선 완료 보고
- 2021년 국민 양형체험 프로그램 추가 제작 및 오픈
- 국민 양형체험 프로그램 홍보 및 이벤트
- 각종 의견 접수 및 처리

#### 3. 전문위원 업무보고

- 전문위원 제144차 전체회의 내역 보고

#### 4.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수정안

- 가. 체포·감금·유기·학대범죄 양형기준 수정안
  - 1) 대유형 3. 아동학대 중유형 가.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양형인자 중 전문위원단 의견이 일치한 아래의 쟁점은 논의를 거쳐 의결
    - ① 유기·학대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와 중한 경우의 정의규정 예시에 성적 학대 관련 내용을 추가
    - ② '농아자'를 '청각 및 언어 장애인'으로 변경
    - ③ '처벌불원'만을 특별감경인자로 변경, '상당한 피해회복(공탁포함)'을 일반감경인자로 반영, '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(강요죄 등 다른 범죄 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)'를 일반가중인자로 추가

- ④ '진지한 반성'에 대한 정의규정을 신설
- ⑤ '형사처벌 전력 없음'의 정의규정을 신설
- ⑥ 누범과 전과에서 '동종'의 범위에 '2유형의 경우 성범죄, 성매매범 죄, 디지털 성범죄 포함'을 추가
- ⑦ 상습범인 경우 '아동학대처벌법 제6조'를 삭제
- ⑧ '6세 미만의 미취학 아동을 상대로 한 범행'을 일반가중인자로 추가
- ⑨ 심신미약(본인 책임 있음) 관련 서술식 기준을 추가
- 2) 대유형 3. 아동학대 중유형 가.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양형인자 중 전문위원단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던 쟁점에 관한 논의
  - ① '참작할 만한 범행동기'의 양형인자 위상 특별감경인자로 두기로 의결
    - ※ 일반감경인자로 두자는 소수 의견 있었음
  - ② '참작할 만한 범행동기'의 정의 중 '단순 훈육, 교육 등 제한 조항' 추가 여부 - 정의 규정에 추가하기로 의결
  - ③ '참작할 만한 범행동기'의 정의 규정을 아래와 같이 의결

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(다만, 단 순 훈육. 교육 등의 목적으로 범행에 이른 경우는 제외한다).

- 피해자를 부양 또는 보호하던 중 정상적인 판단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경우
- 피해자로부터 먼저 가정폭력 등 범행을 장기간 당하여 범행 에 이른 경우
-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
- 3) 대유형 3. 아동학대 중유형 나. '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중상해· 치사·살해'의 양형인자 중 전문위원단 의견이 일치한 아래의 쟁점은 논의를 거쳐 의결(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쟁점이 동일한 부분은 생 략)
  - ① '범행 후 구호 후송'을 감경인자로 명시
  - ② '학대 등의 정도가 중한 경우'로 명칭 수정 및 정의 규정 예시에 기본범죄들에 관한 내용을 추가
  - ③ '사체손괴'를 특별가중인자로, '사체유기'를 일반가중인자로 각 추가

- \* '참작할 만한 범행동기'의 쟁점 및 정의 규정은 중유형 가. 아동복 지법상 아동학대의 의결과 같음
- 4) 대유형 1 체포·감금, 대유형 2 유기·학대의 양형인자에 대한 전문위원 단 의견이 일치한 아래의 쟁점은 논의를 거쳐 의결
  - ① 합의 관련 양형요소 정비에 있어서 대유형 1 '체포·감금', 대유형 2 '유기·학대'는 1-1 범죄군으로 분류
  - ② 대유형 2 '유기·학대'의 상습범 가중 규정의 문구에서 아동복지법 제72조를 삭제
  - ③ 심신미약 관련 서술식 기준 정비
  - ④ '농아자'를 '청각 및 언어장애인'으로 변경
- 5) 대유형 3 아동학대의 집행유예 기준 중 전문위원단 의견이 일치한 아래의 쟁점은 논의를 거쳐 의결
  - ① 집행유예 기준표에 '아동학대(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살해는 제외)'라고 표시
  - ② '피고인이 고령'을 삭제
- 6) 대유형 3 아동학대의 집행유예 기준 중 전문위원단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던 쟁점에 관한 논의
  - ① '피해 회복 노력 없음'을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로 반영할지 여부
  -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로 반영하는 것으로 의결
  - ② '사회적 유대관계 분명'을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로 반영할지 여부
  -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로 반영하는 것으로 의결
  - ③ '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'을 집행유예 일 반 긍정적 참작사유로 반영할지 여부
  - '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'을 삭제하는 것 으로 의결
  - \* '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'을 존치하자는 소수 의견이 있었음
- 7) 대유형 1 체포·감금, 대유형 2 유기·학대의 집행유예 기준에 대한 전 문위원단 의견이 일치한 아래의 쟁점은 논의를 거쳐 의결
  - ① 합의 관련 양형요소 정비를 반영
  - ② 집행유예 전과를 자유형에 한정되는 것으로 명확히 함
  - ③ '피고인이 고령'을 삭제

# 나. 폭력범죄·성범죄·명예훼손범죄·주거침입범죄·공갈범죄·손괴범죄 양형기 준 수정안

- 전문위원단 의견이 일치한 아래의 쟁점은 논의를 거쳐 의결
  - ① 아동학대처벌법 제6조 상습범 가중처벌 규정, 제7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의 가중처벌 규정을 누락된 범죄군에 특별가중인자로 추가
  - ② 합의 관련 양형요소 정비 원칙에 따라 성범죄는 1-2 범죄군, 나머지 범죄는 1-1 범죄군으로 분류함에 따라 양형인자를 정비
  - ③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특별가중인자로 추가되므로 이를 집행유예 주요 부 정적 참작사유로 추가
  - ④ 심신미약 관련 서술식 기준 수정
  - ⑤ '형사처벌 전력 없음', '진지한 반성'에 대한 정의규정 추가
  - ⑥ 집행유예 기준 중에서 '집행유예'를 '금고형의 집행유예'로 수정
  - ⑦ '피고인이 고령'을 삭제
  - ⑧ '농아자'를 '청각 및 언어장애인'으로 수정

#### 5. 벌금형 양형기준 설정 원칙안

- 가. 적용 범위에 관하여 논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
  - 즉결심판 사건과 약식명령 사건은 적용을 배제
  - 구공판 사건과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 사건, 약식사건에 대한 공판절차 회부 사건을 벌금형 양형기준 적용 범위에 포함

#### 나. 설정 대상에 관하여 논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

- 교통범죄에 벌금형 양형기준을 최초 설정하고, 점진적으로 대상을 확대하기로 의결
- ※ 폭력범죄에 벌금형 양형기준을 최초 설정하자는 소수 의견이 있었음

# 다. 벌금형 사건 양형자료 조사 범위에 관하여 논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의 결

- 구공판 사건과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 사건, 약식사건에 대한 공판절차 회부 사건을 양형자료 조사 범위에 포함하기로 의결

### 6. 공청회 개최계획안에 관하여 논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개최하기로 의결

- 일시 : 2022. 2. 25.(금) 14:00~17:00

- 장소 : 대법원 401호 회의실

- 방청 : 대법원 유튜브 채널을 통한 중계

- 의견 접수 : 이메일 및 유튜브 댓글로 접수

## 7. 다음 회의(제115차 회의) 일정

- 일시: 2022. 3. 28.(월) 오후 시간 미정

- 안건 : ①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제출된 의견 검토 및 아동학 대범죄 수정 양형기준 최종 의결

② 벌금형 양형기준 설정 원칙안에 제출된 의견 검토 및 벌금형 양형기준 설정 원칙 최종 의결